

工業所有權制度 대폭 改正

1.13 公布…9.1부터 施行

特許法改正法律

法律第 4207號
1990.1.13 公布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發明을 보호·獎勵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技術의 발전을促進하여 產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發明”이라 함은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한 것을 말한다.

2. “特許發明”이라 함은 特許를 받은 發明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生產·사용·讓渡·貸與·輸入 또는 展示(讓渡나 貸與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는 行위

나.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行위

다. 물건을 生產하는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나목의 行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生產한 물건을 사용·讓渡·貸與·輸入 또는 展示하는 行위

第3條(未成年者 등의 行爲能力) ① 未成年者·限定治產者 또는 禁治產者는 法定代理

人에 의하지 아니하면 特許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이하 “特許에 관한 節次”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產者가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法定代理人인 親族會의 同意없이 상대방이 請求한 審判·抗告審判 또는 再審에 대한 節次를 밟을 수 있다.

③ 行爲能力 또는 法定代理權이 없거나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음에 필요한 授權이 缺失된 者가 밟은 節次는 補正된 當事者나 法定代理人의 追認이 있을 때에는 行위시에 邊及하여 그 効力가 발생한다.

第4條(法人이 아닌 社團등)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出願審查의 請求人, 特許異議申請人, 審判의 請求人 및 被請求人 또는 再審의 請求人 및 被請求人이 될 수 있다.

第5條(在外者の 特許管理人) ①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이하 “在外者”라 한다)는 第3項의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在外者の 特許에 관한 代理人으로서 國내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者(이하 “特許管理人”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處分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特許管理人은 특히 수여된 權限외의一切의 節次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處分에 訴訟에 대하여 本人을 代理한다.

③ 在外者로서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하여 등록한 權利를 가지는 者는 特許管理人의 選任·變更 또는 그 代理權의 수여·消滅에 관하여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④ 在外者는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할 때 또는 당해 特許權의 存續期間중에는 第1項의 特許管理人을 選任·登錄하여야 한다.

第6條(代理權의 범위)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者로부터 特許에 관한 節次를 賦을 것을 委任받은 代理人은 特別한 授權을 얻지 아니하면 特許出願의 變更·포기·취하,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취하, 請求·申請이나 申請의 취하,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이나 그 취하, 第167條의 規定에 의한 拒絕查定에 대한 抗告審判請求, 第1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請求 또는 復代理人의 選任을 할 수 없다.

第7條(代理權의 증명) 特許에 관한 節次를 賦는 者의 代理人(特許管理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第5條第3項에 規定하는 者가 아닌 者의 代理權은 이를 書面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第8條(代理權의 不消滅) 特許에 관한 節次를 賦는 者의 委任에 의한 代理人의 代理權은 本人의 死亡이나 能力의 壓失, 本人인 法人의 合併에 의한 消滅, 本人인 受託者の 信託任務의 종료, 法定代理人의 死亡이나 能力의 壓失 또는 代理權의 消滅이나 變更으로 인하여 消滅하지 아니한다.

第9條(個別代理) 特許에 관한 節次를 賦는 者의 代理人이 數人이 있는 때에는 特許權에 대하여 각 者가 本人을 代理한다.

第10條(代理人의 改任등) ①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賦는 者가 그 節次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口頭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節次를 賦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 그 節次를 賦도록 命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賦는 者의 代理人이 그 節次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口頭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節次를 賦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改任을 命할 수 있다.

③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辨理士로 하여금 代理하게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命令을 한 후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理人의 選任 또는 改任전에 第1項의 特許에 관한 節次를 賦는 者 또는 第2項의 代理人이 特許廳에 대하여 한 特許에 관한 節次는 無効로 할 수 있다.

第11條(複數當事者의 代表) ① 2人 이상이 特許에 관한 節次를 賦는 때에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者가 全員을 代表한다. 다만, 代表者를 선정하여 特許廳에 申告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特許出願의 變更·포기·취하 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취하
2. 申請의 취하·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그 취하
3. 請求의 취하
4. 第167條 또는 第169條第1項의 抗告審判請求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때에는 代表者로 選任된 사실을 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第12條(民事訴訟法의 準用) 이 法에서 代理人에 관하여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事訴訟法 第1編第2章第4節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條(在外者の 裁判籍) 在外者の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에 관하여 特許管理

人이 있는 때에는 그 特許管理人の 住所 또는 營業所를, 特許管理인이 없는 때에는 特許廳 所在地를 民事訴訟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財產所在地로 본다.

第14條(期間의 計算)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한 期間의 計算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期間의 初日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期間이 午前 零時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期間을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計算한다.
3. 月 또는 年의 처음부터 期間을 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月 또는 年에서 그 起算日에 해당하는 날의 前日로 期間이 만료한다. 다만,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日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期間이 만료한다.
4. 期間의 末日이 公休日에 해당하는 때에는 期間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第15條(期間의 연장등) ① 特許廳長은 交通이 불편한 地域에 있는 者를 위하여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異議申請理由 등의 補正期間, 第167條 또는 第1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의 請求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 · 審判長 또는 審查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에 관한 節次를 背을 期間을 정한 때에는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 審判長 또는 審查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에 관한 節次를 背을 期日을 정한 때에는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第16條(節次의 無効) ① 特許廳長은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거나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은 者가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特許料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特許에 관한 節次를 無効로 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節次가 無効로 된 경우에는 그 期間의 解怠가 天災 · 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 이내에 또는 그 期間이 만료된 후 1年 이내에 請求에 의하여 그 無効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第17條(節次의 追完) 特許에 관한 節次를 背은 者가 天災 · 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第167條 및 第1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의 請求期間, 第1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의 請求期間 또는 民事訴訟法 第414條의 規定에 의한 即時抗告의 期間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期間이 만료된 후 1年 이내에 解怠된 節次를 追完할 수 있다.

第18條(節次의 効力의 承繼)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에 관하여 背은 節次의 効力은 그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承繼人에게 미친다.

第19條(節次의 繼行)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가 特許廳에 繫屬중에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移轉이 있는 때에는 그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承繼人에 대하여 그 節次를 繼行하게 할 수 있다.

第20條(節次의 중단) 特許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許廳에 繫屬중인 節次는 중단한다. 다만, 節次를 背을 것을 委任받은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當事者가 死亡한 경우
2. 當事者인 法人이 合併에 의하여 消滅한 경우
3. 當事者가 節次를 背을 能力を喪失한 경우
4. 當事者の 法定代理人이 死亡하거나 그 代理權을 藐失한 경우

5. 當事者의 信託에 의한 受託者의 任務가 종료한 경우
 6.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代表者 가 死亡하거나 그 資格을 壓失한 경우
- 第21條(中斷된 節次의 受繼)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廳에 繫屬중인 節次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그 節次를 受繼하여야 한다.
1. 第20條第1號의 경우에는 그 相續人 · 相續財產管理人 또는 法律에 의하여 節次를 繼行할 者. 다만, 相續人은 相續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節次를 受繼하지 못한다.
 2. 第20條第2號의 경우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
 3. 第20條第3號 및 第4號의 경우에는 節次를 胎을 能力を 회복한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이 된 者
 4. 第20條第5號의 경우에는 새로운 受託者

 5. 第20條第6號의 경우에는 새로운 代表者 또는 當事者
- 第22條(受繼申請) ①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②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特許廳長 · 審判官 또는 抗告審判官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에 대하여 職權으로 調查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 ④ 特許廳長 · 審判官 또는 抗告審判官은 決定 · 查定 또는 審決의 謄本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에 대하여는 受繼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 ⑤ 特許廳長 · 審判官 또는 抗告審判官은 第21條에 規定된 者가 중단된 節次를 受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期間을 정하여 受繼를 命하여야 한다.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受繼가 없는 경우에는 그 期間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受繼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⑦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繼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3條(節次의 중지) ① 特許廳長 · 審判官 또는 抗告審判官이 天災 · 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職務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特許廳에 繫屬중인 節次는 그 사유가 消滅될 때까지 중지된다.

- ② 特許廳長 · 審判官 또는 抗告審判官은 當事者가 不定期間의 障碍로 特許廳에 繫屬중인 節次를 繼行할 수 없는 때에는 決定으로 그 중지를 命할 수 있다.
- ③ 特許廳長 · 審判官 또는 抗告審判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중지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를 한 때에는 이를 각각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4條(中斷 또는 중지의 効果) 特許에 관한 節次가 中斷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期間의 進行은 정지되고 그 節次의 受繼通知를 하거나 그 節次를 繼行한 때부터 다시 全期間이 進行된다.

第25條(外國人の 権利能力) 在外者중 外國人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権利를享有할 수 없다.

1. 그 者가 속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동일한 조건으로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権利의享有를 인정하는 경우
2. 大韓民國이 그 外國人에 대하여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権利의享有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者가 속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동일

한 조건으로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

3. 條約 및 이에 準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第26條(條約의 効力) 特許에 관하여 條約에 이 法에서 規定한 것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에 따른다.

第27條(發明獎勵 補助金) 政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發明獎勵를 위한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第28條(書類提出의 効力發生時期) 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特許廳에 제출하는 出願書·請求書 기타의 書類(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特許廳에 到達된 날부터 그 効力가 발생된다.

② 第1項의 出願書·請求書 기타의 書類를 郵便으로 特許廳에 제출하는 경우에 郵便物의 通信日附印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郵遞局에 제출한 날을 郵便物의 受領證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特許廳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

③ 特許協力條約 第2條(vii)의 國際出願(이하 “國際出願”이라 한다)에 관한 書類를 郵便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廳에 到達한 날부터 그 効力가 발생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것외의 郵便物의 遲延·郵便物의 亡失 및 郵便業務의 中斷으로 인한 書類提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商工部令으로 정한다.

第2章 特許要件 및 特許出願

第29條(特許要件) ① 產業상 이용할 수 있는 發明으로서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1. 特許出願전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實시된 發明

2. 特許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發明

② 特許出願전에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第1項各號의 1에 規定된 發明에 의하여 용이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發明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

③ 特許出願한 發明이 당해 特許出願을 한 날 전에 特許出願하여 당해 特許出願을 한 날 후에 出願公開 또는 出願公告된 he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發明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特許出願의 發明者와 he特許出願의 發明者나 實用新案登録出願의 考案者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特許出願의 特許出願時의 特許出願人과 he特許出願이나 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人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3項의 he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録出願이 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法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第214條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第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録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3項중 “出願公開”는 “出願公開 또는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로,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으로 한다.

第30條(新規性이 있는 發明으로 보는 경우)

新年企劃特輯(1)

①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發明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月 이내에 特許出願을 하면 그 發明은 第2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研究集會에서 書面으로 발표함으로써 第2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자기의 意思에 반하여 그 發明이 第2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博覽會에 出品함으로써 第2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催하는 博覽會

나.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博覽會

다. 政府의 승인을 얻어 國外에서 開催하는 博覽會

라. 條約의 當事國領域안에서 그 政府나 그 政府로부터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博覽會

② 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特許出願과 동시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特許出願일로부터 30日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1條(植物發明特許) 無性的으로 反復生殖 할 수 있는 變種植物을 發明한 者는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第32條(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發明에 대하여는 第2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

1. 原子核 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2.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해할 염려가 있는 發明

第33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① 發明을 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다만, 特許廳 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질 수 없다.

② 2人 이상이 共同으로 發明한 때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共有로 한다.

第34條(無權利者의 特許出願과 정당한 權利者の 보호)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特許出願으로 인하여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無權利者의 特許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の 特許出願은 無權利者가 特許出願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無權利者가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權利者が 特許出願하거나 無權利者の 特許出願에 대한 出願公開 또는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60日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權利者が 特許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5條(無權利者의 特許와 정당한 權利者の 보호) 第13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特許를 無効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特許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の 特許出願은 無効로 된 그 特許의 出願時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特許의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2年을 경과한 후에 特許出願을 하거나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特許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